

특정감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—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—

2022. 12.

1. 일람표

(단위 : 천 원)

번호	소관	건명	행정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			
			시정	주의	회수	금액	감액	금액	추징	금액
계		1건	1	0	0	0	1	5,237	0	0
1	○○○○과	△△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	1	-	-	-	1	5,237	-	-

경 상 북 도

시 정 요 구

제 목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
소 관 청 ▣▣▣▣시
관 계 부 서 ●●●●과
내 용

▣▣▣▣시 ●●●●과에서는 2018. 3. 5. ◇◇건설(주) 외 4개사와 계약하여 ‘▣▣▣▣시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’를 아래 [표1]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.

[표1]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 현황

(단위 : 백만 원)

공 사 명	사업내용	총공사비			사업기간	시공사 (대표자)	비고 (공정률)
		계	도급	관급			
▣▣▣▣시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	♀♀♀♀ 건립 1식	27,976	22,386	5,590	2018. 3. 15. ~ 2022. 9. 30.	◇◇건설(주) 외 4개사	52% (2022. 9. 26. 시공중지)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 및 「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」에 따르면 시·군 사업 중 도비 또는 국비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% 이상 증가하는 경우(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) 설계 변경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국·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하거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%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‘▣▣▣시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’를 추진하면서 현장타설 암거를 PC암거로 공법을 변경하여 최초 계약금액 18,295,083천 원에서 22,385,963천 원으로 4,090,880천 원(22.36%)이 증가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채 2021. 9. 27. 아래 [표2]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.

[표2]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 설계변경현황

(단위 : 천 원)

공 사 명	사업기간	계약일자	계약금액	증감액 (최초계약대비)	증감률 (최초계약대비)	비고
▣▣▣시 △△△△△△ 건립공사	2018. 3. 15.	2018. 3. 5.	18,295,083			최초계약
	~ 2022. 9. 30.	2019. 12. 11.	20,028,006	증1,732,923	증9.47%	1회변경
	(2022. 9. 26. 시공중지)	2021. 9. 27.	22,385,963	증4,090,880	증22.36%	2회변경

그 결과 PC암거 설치비 5,237천 원(제경비 포함)이 과다 계상되었다.

조치할 사항 ▣▣▣시장은

-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,
-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5,237천 원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)